

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43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1. 05. 이쌍자 의원 등 7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1. 12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1. 24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「스포츠클럽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나.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다.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라. 지원신청 및 교부,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마. 지도·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스포츠클럽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3호
- 예고기간: 2024. 1. 5.(금) ~ 2024. 1. 10.(수) [5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「스포츠클럽법」이 제정되어 시행(2022.6.16.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 -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 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 -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활동 지원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음.
 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 -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.
 -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지원신청·교부 등(안 제5조, 제6조)
 -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되,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 클럽에 한정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음.
 - 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 - 회계관리(안 제7조)
 -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
 - 지도·감독 및 환수(안 제8조, 제9조)
 -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도·감독 규정을 명시하고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음.

-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스포츠 클럽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4. 1. 24. 원안가결